

2021년도 4/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22. 1.

감사위원회

1.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고 대상

- 기 간 : 2021. 9. 1. ~ 12. 31.(2021년 4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시장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 접수결과

- 2021년 4분기 총 121건 접수

[표 1] 2021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접 수	창 구	합 계	10월	11월	12월
공익제보 지원센터	공직자비리신고	71	15	32	24
	공익신고	46	10	17	19
	부정청탁	0	0	0	0
	퇴직공무원특혜	0	0	0	0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	4	1	1	2
합	계	121	26	50	45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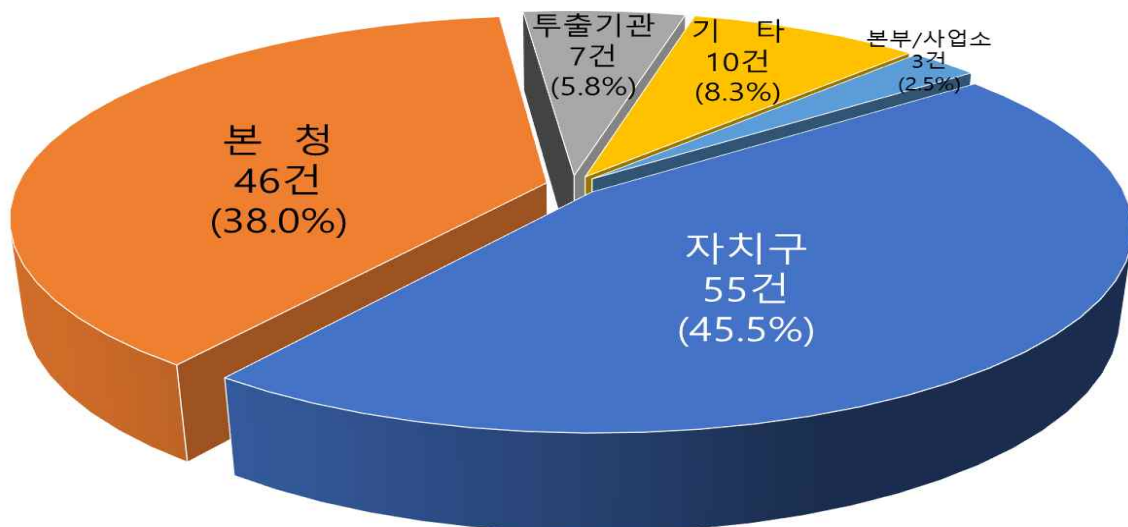
(단위 : 건)

경로	합 계	공익제보지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오프라인 우편/방문/팩스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이첩
접수건수	121 (100%)	110 (90.9%)	7 (5.8%)	4 (3.3%)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55건(45.5%)으로 가장 많았음
 -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8건
 -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23건
 - 기타 일반민원 등 24건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46건(38.0%), 본부/사업소 소관 3건(2.5%)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8건, 공직자비리신고 26건, 일반민원 12건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 공직자비리신고 1건, 일반민원 1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7건(5.8%), 기타 10건(8.3%)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4건, 일반민원 3건
 - 기타 10건은 중앙 정부 등 타기관 소관 제보



3. 공익제보 분류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121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71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71(58.6%)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121 (100%)	54 (44.6%)	17 (14.0%)	50 (41.4%)

* 청원/제안/건의/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

※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4. 공익제보 내용 분석

□ 공익제보 해당 71건 세부내역

○ 부패신고 해당 54건 세부 내용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부 정 청 탁	본 청	1	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
	소 계	1	
업 무 부 적 정	본 청	15	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부주의 행위 관련 (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
	자 치 구	18	
	투 자 출 연 기 관	4	
	소 계	37	
불 공 정 행 위	본 청	2	입찰이나 채용,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본 부 · 사 업 소	1	
	소 계	3	
복 무	본 청	8	초과근무/출장 부정행위, 직무 태만, 불친절,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
	자 치 구	5	
	소 계	13	
총	계	54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공익신고 해당 17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 분	건수	소관기관	조치 상황	내 용
영유아보육법	4	본 청	개선3, 해당없음2, 취하3	어린이집 운영 비리 등
	4	자 치 구		
공 유 재 산 법	2	본 청	진행중2	아파트 기부 채납 등
감염병예방법	1	자 치 구	개선	방역수칙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1	본 청	해당없음	건설업 등록증 대여
대 외 무 역 법	1	자 치 구	진행중	제조국 미표시
도 시 정 비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	조합 선관위원 선임 규정 위반
아동학대처벌법	1	본 청	진행중	아동학대 은폐
주 차 장 법	1	자 치 구	수사중	불법건축물 신고
하 수 도 법	1	사 업 소	기 조사사항	하수처리 시설의 불법 방류
총 계	17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5. 처리 및 조치 결과 (2021.12.31.기준)

처리 내역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단위 : 건)

총계	처분 및 개선(20)		종결(55)				진행중	취하
	처분 (조치)	개선 등	해당없음	권한없음 (직접제보안내)	중복 등 (중기불충분, 보완요구 등)	중지 (감사원 감사, 수사 재판중)		
121	6	14	31	6	17	1	36	10

※ 개선 등 내역 :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처분(조치) 내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단위 : 건)

연번	신고구분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1	부 패	계약 발주 관련 업무 소홀 등	본 청	통보2
2	부 패	총괄 책임자의 실적 위조 등 업무 부당행위	투 출 기 관	업무배제, 신분상조치
3	부 패	민간위탁 시설장의 문제사항 조치요구	본 청	복무위반 조치요구
4	부 패	복무 위반 등	자 치 구	훈계1
5	부 패	일반쓰레기 불법처리 지시	본 청	감액 변경계약 체결
6	부 패	주차장 요금 징수 업무 부적정	사 업 소	환불, 관리감독철저